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심사 보고서

2006. 6. 23

행정위원회

1. 審查經過.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6월 5일 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6월 22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2006년 6월 22일

제1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정진)

가. 개정이유

- 우리 구가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단계 시범 자치구로 선정됨에 따라, 우리 구 조직을 복지·보건·고용·주거·문화 등 종합적인 전달체계로 개편하여 수요자인 구민 중심의 유연한 조직 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구본청 국 명칭변경

- 기획재정국 ⇒ 재정경제국
- 생활복지국 ⇒ 주민생활지원국

○ 부서 신설 및 통·폐합

- 신 설
 - . 주민생활지원과(주민생활지원국 소속)
 - . 전산정보과(행정국 소속) ⇒ 기획예산과에서 분리 신설
- 통 폐 합 : 자치행정과+재난안전관리과 ⇒ 자치행정과(행정국 소속)

○ 소관업무 조정

- 제5조 행정국의 “새마을, 바르게살기운동 등 시민단체 지원, 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, 관광진흥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, 생활체육 및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”을 제7조 생활복지국으로 하고,
- 제6조 기획재정국의 “구정의 기획·조정·업무평가에 관한 사항,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, 구정의 정보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”을 제5조의 행정국으로 하고,
- 제7조 생활복지국의 “중소기업의 지원, 육성에 관한 사항, 상공업 및 에너지행정에 관한 사항, 소비자보호·물가안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, 농수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”을 제6조 기획재정국으로 하고,
- 제7조 생활복지국의 “대기보전 및 소음·진동대책에 관한 사항, 수질보전·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,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,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”을 제8조 도시관리국으로 하고,
- 제8조 도시관리국의 “토지관리·토지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,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”을 제6조 기획재정국으로 함.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
 - 지방자치법 제102조(행정기구)
 -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-1220(2006.4.5)호: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 계획
 -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-1428(2006.4.19)호: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관련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
 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제사무 처리규칙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합의사항 : 합의되었음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김찬재)

-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이 2007.1.1 전국의 모든 자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될 예정이며,
- 우리 구의 경우 1단계 시범구로 선정되어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권고되고 있으며, 시범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동별로 약 2천만원 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므로 행정자치부 지침(자치제도팀1428, 2006.4.19)에 따른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審查結果 : 原案可決